

유권자 권리장전

1. 유효 등록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 등록 유권자란 이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국민 중 중범죄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에 있지 않고 현 거주지 주소로 등록된 유권자를 말합니다.
2. 자기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으면 임시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투표소 문을 닫기 전에 투표소 안에 있었거나 줄 서 있었다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투표를 완료하기 전에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언제든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 투표지와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자도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 담당관에게 반환하면 새 투표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도움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없으면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표한 우편 투표지는 카운티의 어느 선거구에나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의 선거구에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수의 주민이 거주한다면,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받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되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이 공무원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 공무원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불법 또는 부정 행위를 지방 선거 공무원이나 주 총무처장관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어느 것이 무시되거나 부정 선거 또는 불법 행위를 알게 되면, 주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에 신고하십시오.

선거 공무원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투표소 위치, 투표지에 나오는 안건과 후보자 등)를 보내기 위해 유권자 등록 진술서상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률으로 금지되어 있고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각종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에 나온 운전면허 및 사회보장 번호 또는 유권자 서명은 이런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그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고 싶으면, 주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총무처장관의 가정안전(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거나 www.sos.ca.gov 를 참조하십시오.